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Free · Trade · Agreement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본 안내서는 우리 서비스 수출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위해 필요한 현지 규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국내 기업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베트남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베트남 진출시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안내서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Contents

1

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출 기본 요건

- 1 국경간 공급의 기본 요건 9
- 2 상업적 주재의 기본 요건 10

2

에듀테크 서비스

- 1 에듀테크 서비스의 정의(교육 서비스, 일부 관련 ICT 서비스) 15
- 2 관련 규제 현황 16
 - (1) 국경간 공급 16
 - (2) 상업적 주재 16
 - 1) 교육기관 설립의 경우 16
 - 2) 온라인 게임을 통한 교육 서비스 17
 - 3) 투자 인센티브 18

3

ICT 서비스

- 1 ICT 서비스의 정의(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통신서비스) 23
- 2 관련 규제 현황 24
 - (1) 국경간 공급 24
 - (2) 상업적 주재 24
 - 1) 통신서비스 24
 - 2) 부가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25
 - (3) 모든 공급 방식에 공통되는 요건 26
 - 1) 데이터 현지화 26
 - 2) 개인정보 보호 27

4

프랜차이즈 서비스

- 1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정의 33
- 2 관련 규제 현황 33
 - (1) 국경간 공급 34
 - (2) 상업적 주재 34
 - (3) 모든 공급 방식에 공통되는 요건 35

- [참고] 베트남 법령의 종류 37

신성장·유망 산업 공약을 통한 양국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 투자 1위의 핵심 협력 국가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 공급망 재편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2025년이면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베트남 FTA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상호 협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준 또한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성장·유망 산업 공약을 통한 양국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정부는 “2027년 세계 10위권 서비스 시장 진입을 목표로,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수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 이는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상품 수출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의 특성상 각국의 현지 규제는 상품 교역에서의 ‘관세’와 같이 높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FTA 서비스 양허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10위’ 서비스업 수출국으로…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2023.6.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922>



한편 지난 3월 베트남 통계청은 “베트남의 2024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하여 2020~2023년 동안의 1분기 성장률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성장하는 베트남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에듀테크, ICT, 프랜차이즈와 같이 우리 기업들의 주력 해외 진출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도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규범 환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다자(WTO) 또는 양자(FTA)간 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양허 규정이 베트남 현지 규범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므로(예: ICT 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선) 개별 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양허 규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서비스 수출의 핵심 산업인 에듀테크, ICT,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내서가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서비스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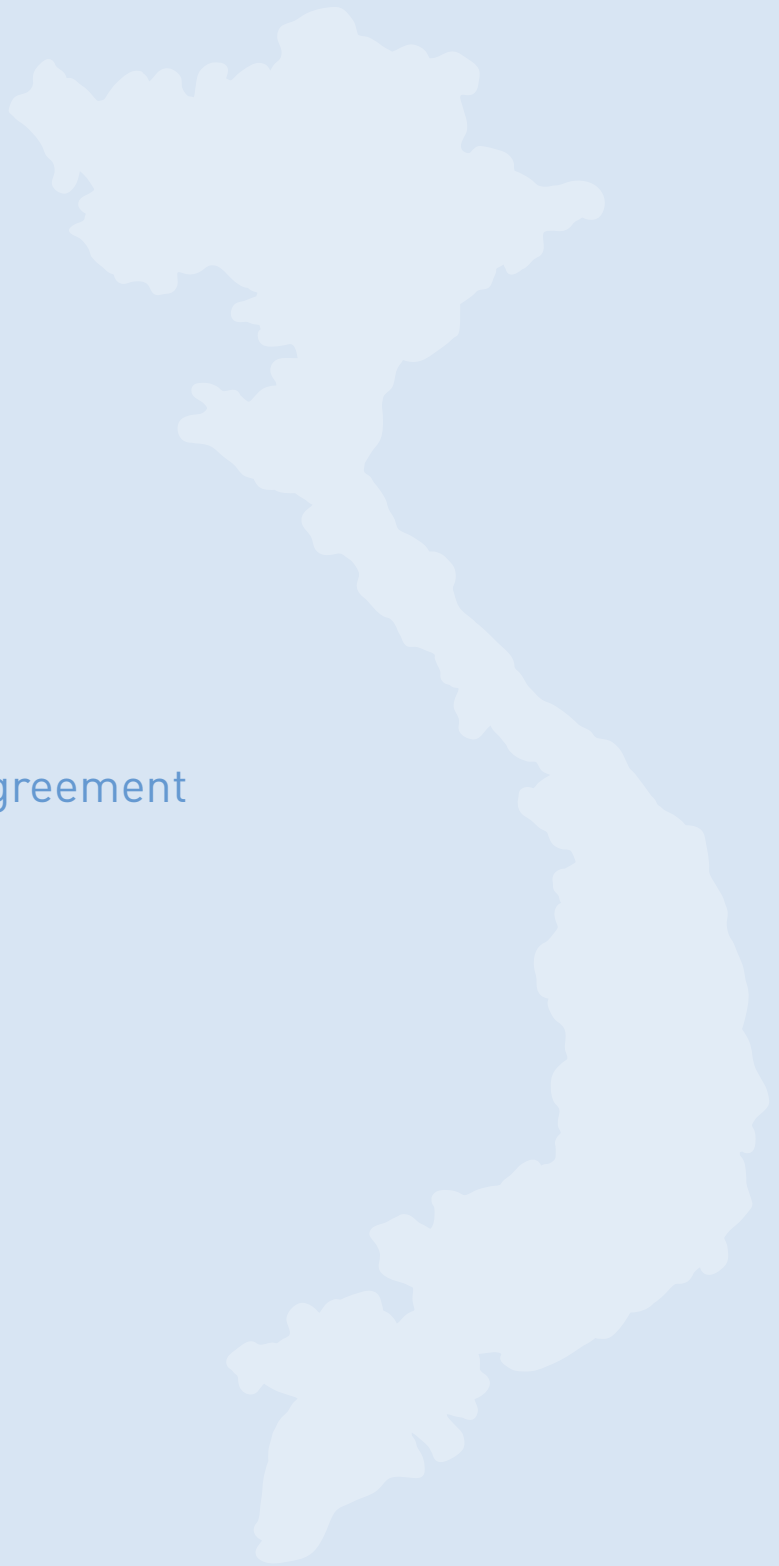


01

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출 기본 요건

1. 국경간 공급의 기본 요건
2. 상업적 주재의 기본 요건

Free · Trade · Agreement





1



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출 기본 요건

- ④ 우리 기업이 베트남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서비스 공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 *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현지 법인 설립 유무'임
 -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방식: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베트남의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 (현지법인 설립 X)
 - 예)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 문화 콘텐츠 수출 등
 - ②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베트남에 가서 법인 등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현지법인 설립 O)
 - 예)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
- ④ 이러한 서비스 공급 방식 분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예: 한-베트남 FTA)²⁾등 베트남이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제협정들에서 '양허'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예) 특정 서비스분야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지만, '상업적 주재'는 일부 조건 하에서 허용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의 기본 요건

Check!

- ① 베트남 국내법에 따라 국경간 공급을 금지/제한하고 있는가를 확인
 - ② 한-베트남 FTA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국경간 공급' 방식이 양허되어 있는지 확인
 - ③ 베트남 법에 따른 국경간 서비스 공급 관련 각각의 규제를 확인
- ④ 국경간 공급을 통해 베트남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개별 서비스 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국경간 공급에 대한 구체적 요건(등록, 인허가 등) 충족이 필요하므로 세부 규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 보험서비스의 경우 국경간 공급에 관하여 법령을 통해 면허 요구
 - ④ 국경간 공급의 주요 수단인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본 요건 충족이 필요함
 - 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사이버보안법 등

2)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우리나라의 FTA 검색 "한-베트남 FTA"



2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기본 요건

Check!

- ① 베트남 법에 따라 상업적 주재 금지/제한 여부를 확인
- ② 한·베트남 FTA에 따른 상업적 주재 양허 여부를 확인
- ③ 베트남 투자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절차와 관련 규제를 확인

④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상법 제16조 ‘베트남에서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상인’ 참조³⁾

- 100% 외국인 투자회사: 투자자는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영업 방식과 기술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합작회사: 합작 영업 참여자의 기업 경영권, 이익률 및 위험은 해당 참여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짐
- 베트남 대표 사무소: 해외 모회사와 베트남 고객 간 소통 역할을 하여 사업 투자 기회를 촉진하고 수익성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음(베트남 상법 제17조 및 18조)

④ (신규 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 투자자와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여 사업 합작 계약을 바탕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베트남 내 법인설립 기본 절차상 요건을 충족해야함(총 절차 수행기간: 약 2-3개월)

-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영토에 생산과 사업에 관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문서임(베트남 투자법 제3절 제37조~41조)⁴⁾

IRC 발급절차

- 투자등록증명서(IRC)을 발급하는 법적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됨
- Industrial zone, export processing zone, high-tech zone 또는 economic zone의 경우: 해당 지구의 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후 발급 처리(베트남 투자법 제39조)
위 특수 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 지역의 기획투자국(DPI)에서 처리
- 투자정책의 승인(투자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국회·총리 또는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에게 투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함

3)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법령검색 “베트남 상법(Commercial Law / Luật Thương mại)” (No. 36/2005/QH11)

4)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법령검색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 Luật Đầu tư)” (No. 61/2020/QH14)



- 사업자등록증명서(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ERC): 베트남 내 기업의 법정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베트남 기업법 제4조)⁵⁾

ERC 발급절차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획투자국(DPI) 사업등록국에 서류를 신청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IRC) 절차가 완료된 후에 신청 가능기업 등록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세부 정보를 기재한 신청 서류 및 양식을 준비하여야 함(시행령-Decree No. 01/2021/ND-CP)
- 해당 서류를 사업등록국에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
- 신청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 수령(실제는 영업일 기준 7일~10일 정도로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아 미비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기존 법인 인수)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자본(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 진행이 필요(총 절차 수행기간: 약 3-4개월)

일반적인 법인 인수 절차

- ① 투자자는 관할 지역 기획투자국(DPI)에 주식 및 출자 자본 인수 등록을 하고 승인(M&A 승인)을 받아야 함
- ② 인수 절차 수행 이후 해당 베트남의 출자 자본 및 베트남 회사를 관리할 법적 대표자를 선임함
- ③ 사업자등록증명서의 내용 변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베트남 회사의 소유자로 등록함

- (대표사무소 설립) 일반적인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 진행이 필요(총 절차 수행기간: 6-8주)

일반적인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 ①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무역 촉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② 관할 지역 경찰국(공안)에 대표사무소의 원형 인감을 제작하여 등록함
- ③ 대표사무소는 세무 이행을 위한 세무 코드를 등록하며, 해외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함

5)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법령검색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 / Luật Doanh nghiệp)” (No. 59/2020/QH14)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02

에듀테크 서비스

-
1. 에듀테크 서비스의 정의(교육 서비스, 일부 관련 ICT 서비스)
 2. 관련 규제 현황

Free · Trade · Agreement





2 에듀테크 서비스

1 에듀테크 서비스의 정의(교육 서비스, 일부 관련 ICT 서비스)

- ① 에듀테크(Edutech 또는 Ed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

에듀테크 개념과 유사한 개념 구분

용어(등장 시기)	개념	특징
이러닝 (2002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	인터넷과 컴퓨터에 교육을 접목한 온라인 교육 중심 주요 기기: 인터넷PC
스마트러닝 (2010년)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단말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개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주요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TV
에듀테크 (2010년)	교육에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중점 주요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TV

[자료: 한국이러닝협회]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련 법(「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에듀테크’의 직접적인 정의는 없으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에듀테크 진흥 방안」(2023.9)에서 ‘에듀테크’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 서비스를 총칭”
-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평가, 교육 행정 및 정책 수립 등의 활동
- “에듀테크 산업”이란 에듀테크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유통하거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



- (에듀테크 서비스의 분류) 기본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며, ICT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ICT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높긴 하지만 본 안내서에서는 에듀테크 서비스를 ICT 기술을 접목한 ‘교육 서비스’로 국한함

2 관련 규제 현황

* 현재 베트남 국내법상 “에듀테크”라는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음

- (결정-Decision No. 793/QĐ-TTg)⁶⁾ 에듀테크 분야 외국인 투자자는 ①교육 활동(Educational activities) ②기술 활동(Technological activities) ③거래 활동(Trading activities)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 분야에 관한 등록절차를 진행
 - ① 교육 활동(Educational activities): 교육 활동에 국한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자본 조건을 만족하면 100% 외국자본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단기연수기관, 유치원, 의무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투자 고등교육기관 분교 등의 교육 활동기관이 이에 해당됨
 - ② 기술 활동(Technological activities): ICT 분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등록 요건 또한 함께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ICT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음
 - ③ 거래 활동(Trading activities): 타사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배포하거나 교육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OIT)에 거래 활동으로 사업 등록이 필요함

(1) 국경간 공급 관련

- (특별한 관련 규정 없음) 베트남 국민이 해외 웹사이트 접속 등을 통해 외국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접속금지규정과 같은 특별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베트남이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국경간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무역자유화를 양허한 적이 없으므로 향후 언제든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상업적 주재

1) 교육기관 설립의 경우

- ①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IRC) 및 사업자등록증명서(ERC)를 취득하여야 하며, IRC 취득시 투자 목적(사업)을 설정하고 ERC 취득시 업종 등록을 하게 됨

6) 베트남 법제상 ‘결정(Decision)’은 ‘시행령(Decree)’과 구별되며,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임
본 안내서 p.37 ‘베트남 법령의 종류’ 참조



- ② 외국인 투자자인 사업자가 실제 교육 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 관한 허가 결정, 설립에 관한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함
- ③ 실질적인 교육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IRC 및 ERC 취득 이외에 '교육업에 관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 교육 커리큘럼 ▲ 교육사업 운영 계획 등을 심사받아야 함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허가 요건

교육기관 종류	라이선스/허가	발급 기관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 단기연수기관	교육활동 허가 결정	교육부(MOET) 교육훈련국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DOET)	·시행령-Decree No. 86/2018/ND-CP 제31.1조
외국인투자 유아교육기관	설립 허가 결정 교육활동 허가 결정		·시행령-Decree No. 86/2018/ND-CP 제31.3조
일반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외국어 센터	설립 허가 결정 교육활동 허가 결정		·시행령-Decree No. 135/2018 제1.20조
컴퓨터 교육센터			·시행령-Decree No. 135/2018 제1.22조

-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경영) 만약 에듀테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등록되어야 하며, 부처의 확인이 발급된 이후에만 합법적 웹사이트로 운영 가능(통자-Circular No. 47/2014/TT-BCT의 제13조 및 제16조)⁷⁾

2) 온라인 게임을 통한 교육서비스

*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게임을 접목한 교육서비스를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① 베트남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함 (시행령-Decree No. 72/2013/ND-CP 제32조, 제33조)
- ② 현지 게임 회사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 투자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투자의 정관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베트남의 WTO GATS 양허)

7) 베트남 법제상 '통자(Thông Tư)'는 'Circular'로 영문번역 되며, 우리법 체계의 시행규칙 혹은 시행세칙과 유사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보임
본 안내서 p.37 '베트남 법령의 종류' 참조



③ 베트남에서 교육 서비스를 온라인 비디오 게임 형식으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허가가 필요함(시행령-Decree No. 72/2013/ND-CP 제31조)

- (i) G1 비디오게임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게임 서버를 통한 다수 플레이어들 간 교류가 필요한 게임) 또는
- (ii) 기타 비디오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registration)

*비디오게임 서비스 분류표

G1	게임 서버를 통해 다수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하는 게임
G2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작용만 있는 게임
G3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작용 없이 다수 플레이어간 상호작용이 있는 게임
G4	플레이어간, 그리고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와 상호작용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게임

④ 정보통신부(MIC)로부터 게임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필요(시행령-Decree No. 72/2013/ND-CP 제31조)

* 단, 실무상 온라인 게임 유통 라이선스는 외국인이 G1 게임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발급이 까다로움

3) 투자 인센티브

● 전문 중학교 및 대학에서의 기술 및 기술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사회화* 분야(Socialization of education)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교육 사회화 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시행령-Decree No. 69/2008/ND-CP 제14.4조)

* (교육사회화) 베트남 정부가 199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 정책으로서(정부의결-Government Resolution No. 90-CP 참조)⁸⁾ ‘교육서비스의 사회화’라는 의미로서 베트남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증진하는 정책을 지칭함.⁹⁾ 구체적으로는 교육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국가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의미함

교육 사회화 시설 투자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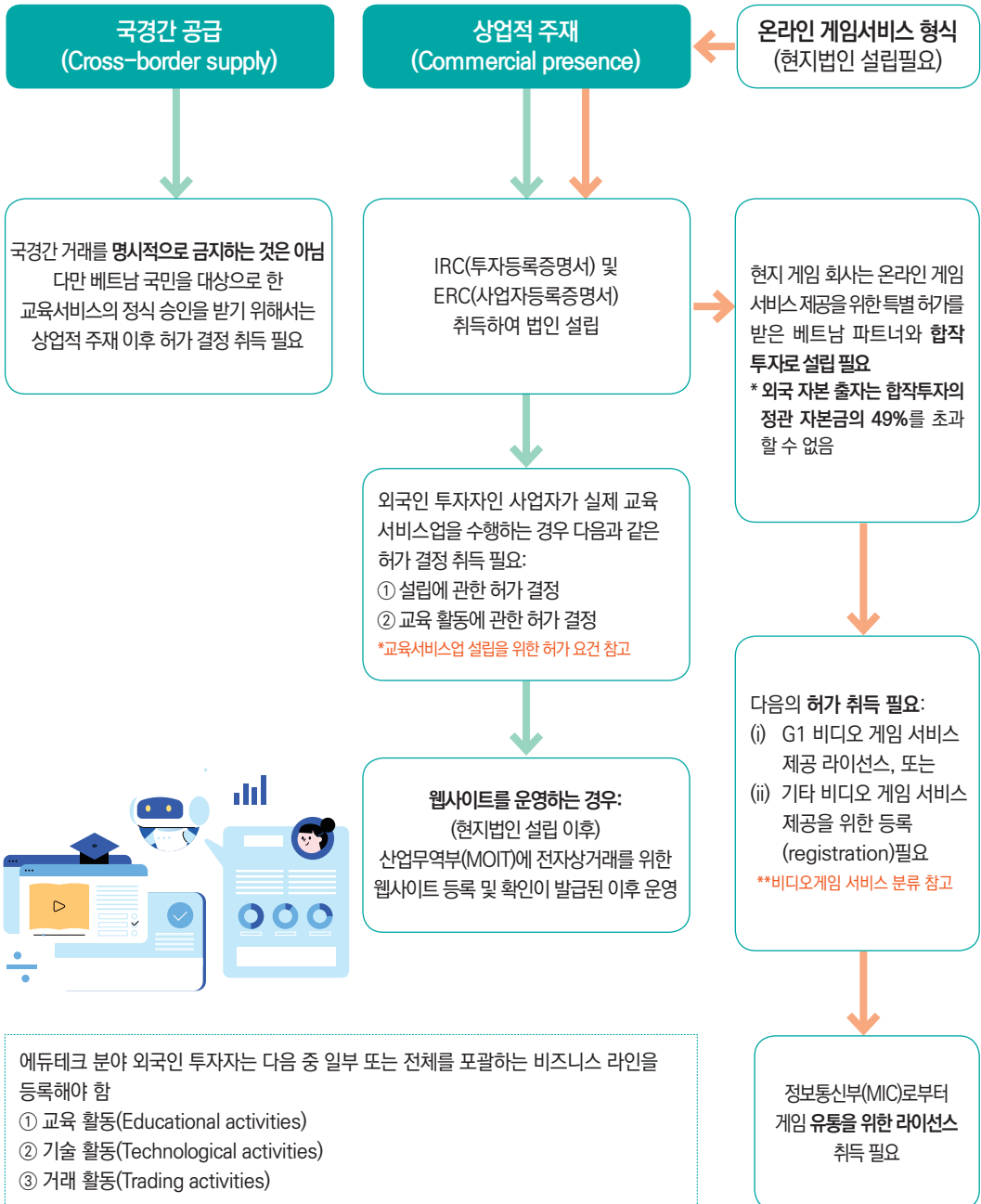
대상	전문 중학교 및 대학에서의 기술 및 기술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사회화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내용	교육 사회화 시설 증진을 위한 지원금, 토지 임대 및 배분, 조세 및 수수료 면제 관련 등
지원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자금 • 이자 보조금 • 기타 자금

8) 베트남 법제상 ‘정부의결(Government Resolution)’은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
본 안내서 p.37 ‘베트남 법령의 종류’ 참조

9) Nguyen Phuoc Trong(2023), “Law 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socialization in Vietnam”,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8(4), pp. 637-638 참조



에듀테크 서비스 공급 방식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03

ICT 서비스

-
1. ICT 서비스의 정의(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통신서비스)
 2. 관련 규제 현황

Free · Trade · Agreement





3 ICT 서비스

1 ICT 서비스의 정의(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통신서비스)

- ICT는 IT(Information Technology)에 통신(Communication)이 더해진 개념으로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영, 관리,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통틀어 지칭함
OECD는 “ICT 제품은 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보 처리 또는 통신 기능을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정의
- ICT 서비스에는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컴퓨터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재생산 또는 배포가 포함됨
 - WTO 분류체계상 구체적으로 한정된 카테고리를 지정하기 어렵지만, 본 안내서에서는 주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¹⁰⁾와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¹¹⁾,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전자게임업(Electronic games business)¹²⁾과 베트남 전기통신법(2023년)에 새로 추가된 통신 도매업(Wholesale activities in telecommunications)¹³⁾등이 ICT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 등 기체결 FTA에서도 기본적으로 WTO에서의 서비스 분류체계(W/120)¹⁴⁾를 따르고 있음

WTO 분류체계상 ICT 서비스 분류표

Provisional UN CPC	서비스 분야	내 용
841~845, 849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IT 디자인 및 개발 서비스 등
7521, 7522**, 7523**, 7529**, 843**	통신서비스	기본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팩킷 교환 데이터 전송, 회선교환 등) 부가 통신서비스(전자 메일, 음성 메일, 인터넷 접속 등)
CPC 964**	전자게임업	온라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
없음	통신 도매업	통신 회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임대하거나 트래픽 및 통신 서비스를 다른 통신 회사에 판매하는 관행

10) W/120이 근거한 Provisional UN CPC에 따르면 CPC 841~845, 849에 해당

11) W/120이 근거한 Provisional UN CPC에 따르면 CPC 7521, 7522**, 7523**, 7529**, 843**에 해당

12) W/120이 근거한 Provisional UN CPC에 따르면 CPC 964(Sporting and other recreational services)의 하위 분류로서 CPC 964**에 해당

13) 해당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합의된 Provisional UN CPC 분류 번호가 없음

14) WTO사무국은 WTO 출범(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서비스무역 협상시 업종 분류를 위해 서비스 분류목록(W/120)을 고안하였으며, W/120은 UN의 '잠정 중앙품목분류(Provisional CPC)'와 매칭



- ICT 서비스는 ICT 활용 서비스(ICT-enabled services)와 구별 필요: ICT 서비스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IT 기술 제공 서비스에 국한된 것인 반면, ICT 활용서비스는 일반적으로 “ICT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 전반”을 지칭하며 ICT 서비스를 포괄하기도 함

* 예) ICT 서비스(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 등) ≠ ICT 활용 서비스(디지털 유통, 핀테크, 에듀테크 등)

2 관련 규제 현황

(1) 국경간 공급

- 베트남의 개정 이전 전기통신법 세부 규정상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허가를 받은 베트남 통신 회사와 상업 계약을 체결(시행령-Decree No. 25/2011/ND-CP, “통신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규칙”)
- 그러나 최근 베트남은 기존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으며, 새로운 “전기통신법 202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법률-Law No. 24/2023/QH15, 소위 “전기통신법 2023”)
 - 전기통신법 2023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OTT 서비스(통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telecommunications application services)의 일종으로 포함) 모두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베트남 통신 회사와의 상업 계약이 없이도 해당 신규 서비스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경간 공급을 허용(법률-Law No. 24/2023/QH15, “전기통신법 2023” 제29조 및 제42조)
 - ⇒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는 특정 통신 서비스 목록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추후 발표 예정
- 다만 OTT서비스 경우에는 ‘TV 방송서비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베트남 영토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국경 간 TV 서비스로 간주되며, ‘유료 TV 서비스’로서 규제의 대상이 됨(시행령-Decree No. 06/2016/ND-CP 및 시행령-Decree No. 71/2022/ND-CP)
 -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급자가 유료 TV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회사만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국경간 공급은 불가능

(2) 상업적 주재

1) 통신서비스

- ① 유선 및 모바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기업과의 (상업)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합작하거나 협력해야 함(시행령-Decree No. 25/2011/ND-CP 제4.2조)

* 현재 베트남의 전기통신법상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Foreign Ownership Limit, FOL)의 상세한 기준이 명시하고 있지 않음. 베트남은 WTO 서비스 양허표(WT/ACC/VNM/48/Add.2)의 구체적 내용을 국내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으므로 WTO 서비스 양허표가 직접 적용



-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 통신 서비스 제공: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합작 투자 또는 사업 협력이 허용
 -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 제공: 베트남에서 통신 네트워크 구축 허가를 받은 통신 기업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합작 투자 또는 거래 협력이 허용
 - 합작투자일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한도: 유선통신서비스 49%, 이동통신서비스 65%
- ② 베트남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 해야 하며, 통신 라이선스는 ‘개별 라이선스’와 ‘클래스 라이선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법률-Law No. 24/2023/QH15, “전기통신법 2023” 제33조)

개별 라이선스	클래스 라이선스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정부가 정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개별 라이선스	표준 인프라 서비스(즉, 개별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 그리고 특정 비인프라 서비스를 포괄하는 클래스 라이선스

2) 부가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OTT,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온라인 전자 게임 등)

- 데이터센터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지분 소유 비율이나 자본 출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법률-Law No. 24/2023/QH15, “전기통신법 2023” 제29조)
- 통신 라이선스 취득 불필요. 단, 등록 또는 통지 절차 준수(법률-Law No. 24/2023/QH15, 전기통신법 2023 제29조 및 제42조)
⇒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는 특정 통신서비스 목록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추후 발표 예정
- 온라인 전자 게임의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가 베트남에서 온라인 전자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i) 사업 협력 계약; (ii) 해당 서비스 공급 권한을 부여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또는 (iii) 해당 서비스 공급 권한을 부여받은 베트남 기업의 주식 구매를 통하여 현지 기업을 설립해야 함 (시행령-Decree No. 72/2013/ND-CP 제41조)

* 베트남의 WTO 약속에 따라 현지 게임 회사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 투자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투자의 정관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WT/ACC/VNM/48/Add.2)

* 한-베트남 FTA에서도 WTO에서의 약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나, CPTPP 회원국 국민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4일부터 전자 게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소유 제한이 철폐되었음



(3) 모든 공급 방식에 공통되는 요건

1) 데이터 현지화

베트남 ‘사이버 공간 데이터에 관한 법’¹⁵⁾에 따라 특정 서비스(통신,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의 요청 사항(협조, 예방, 조사 등)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내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 후 현지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등 다음 의무를 부담 (시행령-Decree No. 53/2022/ND-CP 제26조)

- i) 최소 24개월 동안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베트남에 저장
- ii) 법령 위반 조사 및 내역 처리를 위한 시스템 로그 기록은 12개월 동안 해당 데이터를 베트남에 저장
- iii)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운영 및 유지

사이버 공간 데이터에 관한 법령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 사이버공간에서기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과 관련된 전자데이터 수집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명령 및 절차를 명시 해당하는 전자데이터 수집은 법률조항을 준수하고 동시에 다음 요구사항을 보장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장치 및 전자데이터의 상태유지 - 전자데이터의 복사는 장치에 저장된 전자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되고 검증 가능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복구, 전자데이터 검색 프로세스는 회의록, 사진, 비디오로 기록되어야 함 - 전자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는 자는 전자데이터 수집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전문 담당자여야 함
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베트남에 저장되어야 함 베트남 내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함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 공공정보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사이버 보안 및 범죄예방부서와 협력해야함 베트남의 데이터 저장형태는 기업에서 결정
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저장기간은 기업이 데이터 저장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요청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며, 최소 24개월 간 보관하여야 함 네트워크보안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해야함

15) 자세한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Vol. 3, No. 11 (2022.11), p.5 참조



2) 개인정보보호

- 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행령’(이하 ‘시행령 13’)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는 시행령 13을 준수해야 함(시행령-Decree No. 13/2023/ND-CP, “시행령 13”)

시행령 13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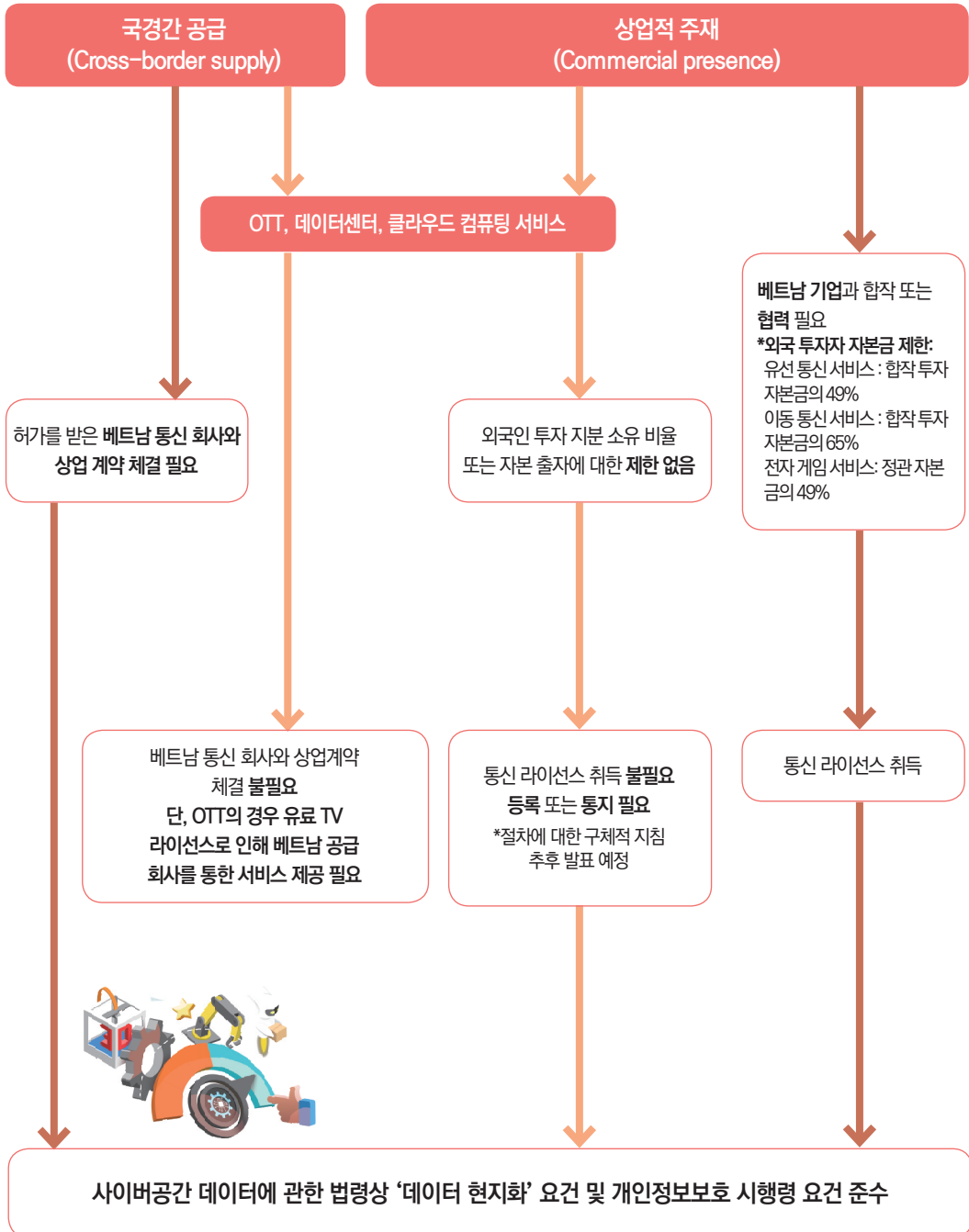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정보주체의 동의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우에만 유효. 정보주체의 침묵 또는 무응답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될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조직/개인 -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민감정보 (Sensitive personal data) (제2조 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필요 민감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는 개인의 법적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정치적, 종교적 견해 b) 혈액형 정보를 제외한 건강기록부에 기재된 건강상태 및 인적사항 c) 인종 또는 민족에 관한 정보 d) 개인의 유전적 또는 후천적 유전적 특징과 관련된 유전 정보 e) 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f) 개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g) 법 집행 기관이 수집하고 저장한 범죄 및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 h) 금융기관, 외국은행의 지점, 결제서비스 제공자, 기타 인가된 기관의 고객에 관한 정보 (법령에 규정된 고객식별정보, 계좌, 예금, 예탁자산, 거래, 신용기관, 은행, 은행 지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증인인 단체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i) 위치 서비스를 통해 식별된 개인 위치 정보 j) 특별 보호가 필요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 특정 개인정보
마케팅 및 광고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안내, 마케팅 및 광고의 내용, 방법, 형태, 빈도 등을 고객이 알고 있음을 전제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



<p>개인정보 영향평가 서류 (제2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주체: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처리 개시 시점부터 개인 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짐(별도의 데이터 관리 주체에 용역을 주지 않는 이상). 별도 정보 관리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관리 주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함 • 제출 주체는 데이터 처리 후 60일 이내에 시행령 4번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공안부 내 Department of Cybersecurity and Hi-tech Crime Prevention(DCHCP)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시행령 5번 양식을 작성하여 DCHCP에 제출 • 제출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관리/처리 주체 - 담당 개인/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 처리할 개인정보의 유형 - 정보 처리, 삭제 기간 - 예상되는 문제 및 피해 - 그러한 문제와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 등
<p>국경간 정보전송 (Cross-border data transfer) (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은 다음의 요건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따른 영향 평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정보주체의 동의 및 b)전송인 및 수령인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 전송인은 DCHCP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해 해당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를 지며, 개인정보 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본 1부를 DCHCP에 제출하여야 함 - 전송인은 정보 전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정보 전송에 대한 정보와 담당 조직 및 개인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DCHCP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ICT 서비스 공급 방식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04

프랜차이즈 서비스

1.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정의
2. 관련 규제 현황

Free · Trade · Agreement





4 프랜차이즈 서비스

1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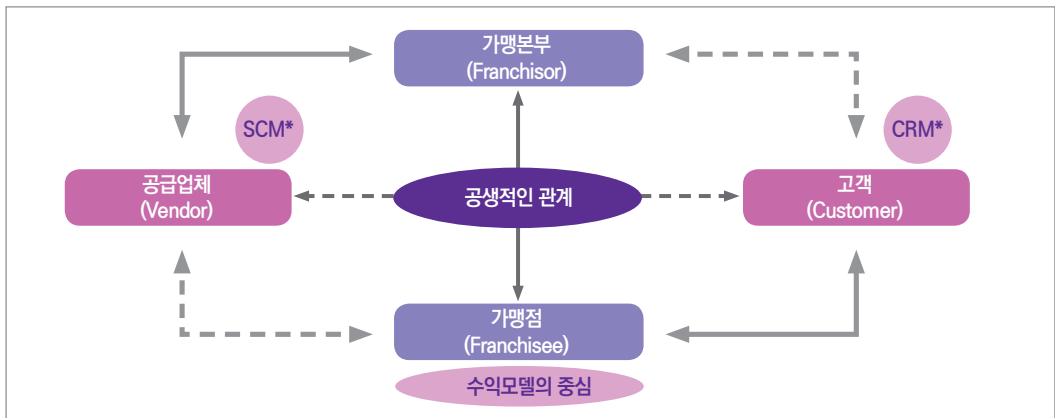
㉮ 프랜차이즈 서비스란 사업자가 특정 권리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

예) 특정 사업 형식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판매 등

* 베트남의 상법 시행령의 정의규정 참고(시행령-Decree No. 35/2006/ND-CP, “Decree 35” 제3조)

- 상품의 도소매 유통서비스 뿐만 아니라, 서비스(외식 교육, 미용, 세탁 등)의 프랜차이즈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종’에 해당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구조



*SCM :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CRM :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2 관련 규제 현황(국경간 공급/상업적 주재)

㉮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방식은 크게 ①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없이 베트남 내 현지 가맹점 (Franchisee)과의 계약만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방식과 ②베트남 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가맹본부(Franchisor)로 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으로 구분



Check!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 세금(통자-Circular No. 103/2014/TT-BTC)

- 베트남에서는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외국 기업에 대해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자세”(외국 계약자세)라고 알려져 있음¹⁶⁾
-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외국 계약자 세금을 납부해야 함

*세율 : 부가가치세(직접법(direct method) 5% 또는 공제법(deduction method) 10%) 및 법인세(납부 세액의 10%)

(1) 국경간 공급

- 1) 외국 가맹본부가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프랜차이즈 등록 필요(시행령-Decree No. 35/2006/ND-CP, “Decree 35” 제17조)

* 등록시 필요 서류

- ①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
- ② 프랜차이즈 소개서
- ③ 서면 증명서
 - (i) 외국 가맹본부의 법적 지위
 - (ii) 산업재산권 대상 라이선싱의 경우 IP 인증서

- 2)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서류 제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거래 등록 결과를 외국 가맹본부에게 통보

* 다만 ‘국경간 공급’ 방식으로 인해 외국 가맹본부가 제출한 서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산업 무역부(MOIT)는 영업일 2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

- 3) 외국 가맹본부는 부가가치세, 법인/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외국 계약자 세’를 베트남 세무당국에게 신고 및 납부

* 외국 가맹본부가 베트남에 상업적 입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베트남 현지 가맹점은 외국 가맹본부에 대한 지불금에서 외국 계약자세를 원천징수/공제해야 함

(2) 상업적 주재

- 1)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RC(투자등록증명서) 및 ERC(사업자등록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 업종별 구체적 요건 확인 필수

예) 요식업 프랜차이즈는 위생허가, 소방허가 등의 서브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16) APOLAT Legal, “Franchising Activities In Vietnam”(2023. 5. 1.), <http://apolatlegal.com/franchising-activities-in-vietnam/>



2) 베트남 내에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대한 영업실적이 있어야 가맹점 모집 가능

* 베트남 영토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영위해야 함 (시행령-Decree No. 35/2006/ND-CP, "Decree 35" 제5조)

3) 관할 지역 산업무역국(MOIT)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계획 보고 후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 수행 가능

4) 외국 가맹본부에 의해 설립된 베트남 현지 법인(자회사)은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법인/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외국 계약자 세 신고 및 납부

(3) 모든 공급 방식에 공통되는 요건

1)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 거주 요건(의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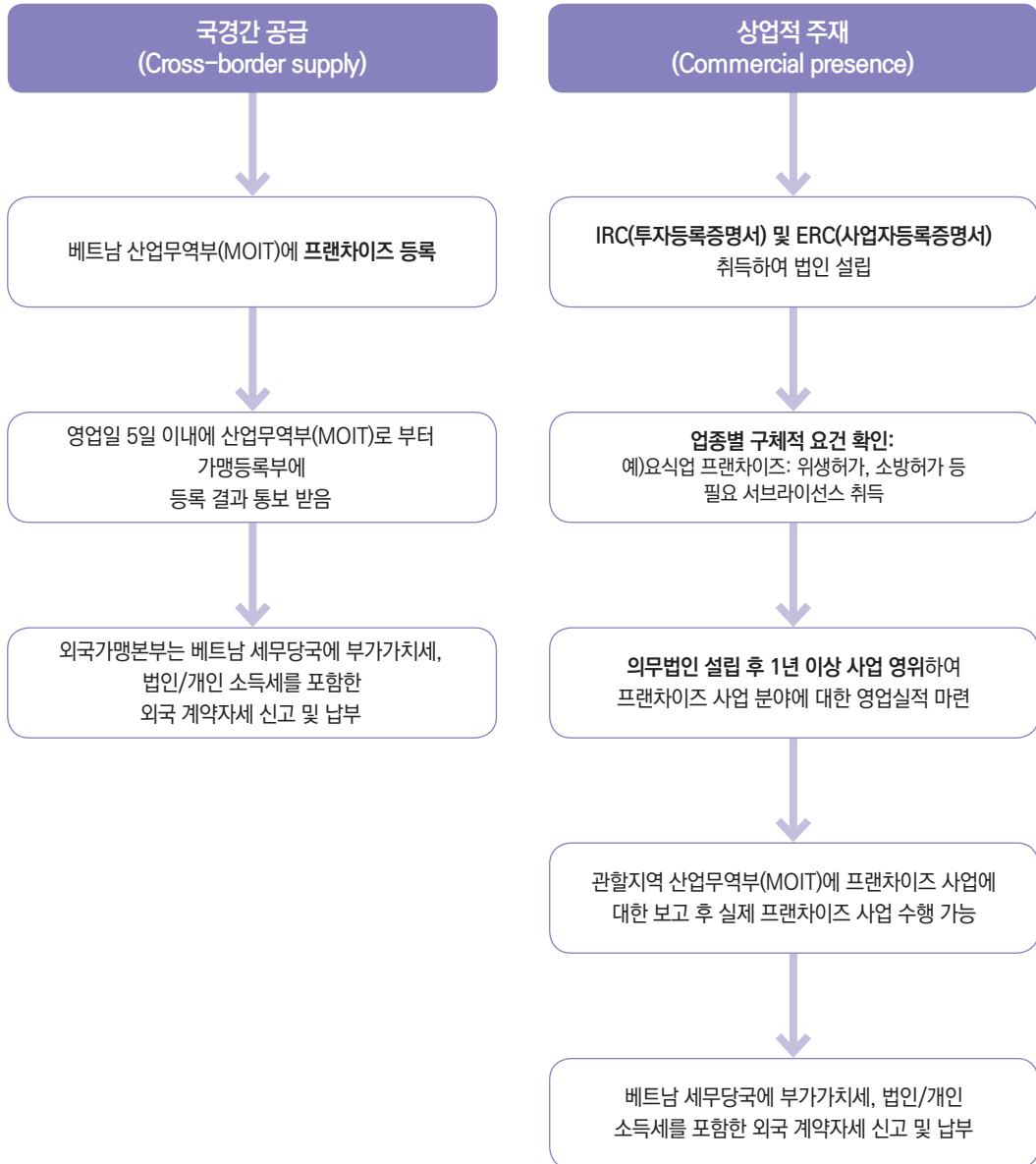
2) 지적재산권 사용권(상표 사용권 포함)을 수반하는 프랜차이즈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적용

3) 프랜차이즈에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다른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므로 '프랜차이즈' 그 자체에 대한 특정 세율은 없음





프랜차이즈 서비스 공급 방식





참고

베트남 법령의 종류¹⁷⁾

1. **헌법(Constitution)**: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에 의해서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 법
2. **법률(Law)**: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헌법의 특정한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권한과 임무에 속한 특정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규범
3. **법령(Ordinance)**: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고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
4. **영(Order)**: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
5. **의정(Agreement by Conference)**: 특정한 범위에 속한 법적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목적 또는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공포하는 법률의 하위법
 * 베트남 법제상 '의정(Nghị Định)'는 'Decree'로 영문 번역 되며, 본 안내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Decree)로 표기
6. **통자(Circular)**: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수상)의 법규범에서 해당분야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률 문건
7. **결정(Decision)**: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
8. **지시(Instruction)**: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의 법률규범 문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에 속한 기관과 단위의 활동을 감사하고 협의하고 독촉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문건
9. **의결(Resolution)**: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친, 회의제도에 따른 기관의 결정. 다수결 혹은 절대 다수결로 표결하는데,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제명, 국회의 임기단축이나 연장, 헌법의 개정은 정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 정부의결(government resolution) 또한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의결을 의미하며 주로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함

17) 외교부 주베트남 대사관(2005),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참조

**국내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규제 안내**
에듀테크·ICT서비스·프랜차이즈

Free · Trade · Agreement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